**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세칙은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재무회계 처리에 관한 서류 및 용어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과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처리의 기본원칙**

1. 회계처리의 기본원칙은 회계규정 제4조의 원칙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법령 및 기업회계기준 등의 개정으로 중요한 회계처리의 기준이 변경될 시는 우선적으로 동 법령 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2 장 손익계산서**

**제3조 손익계산서의 서식**

손익계산서는 계정식으로 작성한다. 단, 사외에 제출 또는 공시용은 보고식으로 작성한다.

**제4조 손익계산서의 항목**

손익계산서의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매출액(영업 수입)
2. 매출원가(영업비용)
3. 매출총이익(영업 손익)
4. 판매비와일반관리비
5. 영업손익
6. 기타영업외수익(금융수익 외)
7. 기타영업외비용(금융비용 외)
8. 법인세차감전순손익
9. 법인세비용
10. 당기순손익

**제5조 매출총이익(영업 손익)**

1. 매출총이익은 회계기간에 속하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매출액의 실현 시기는 재화의 공급 및 용역을 제공한 날로 한다. 단, 매출형태별로 수익인식기준은 다음과 같다.
3. 소프트웨어 매출

* 소프트웨어만 공급하는 경우, 고객이 해당 지적재산의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므로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그리고 최종 고객이 검수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 소프트웨어 공급 및 SI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발주처와 소프트웨어 계약 조건상 계약된 소프트웨어들을 최종 생산하기 위하여 기업은 계약상 고객 요구 조건에 맞게 수정 설계 및 개발 과정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결합 산출물 제공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단일의 수행 의무로 보아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1. 상품매출

* 단말기(휴대폰,태블릿PC 등)을 매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고, 고객에게 개통(인도)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1. 수입수수료 매출

* 계약된 증권사가 증권 앱(App) 고객 접속 횟수를 확인하여 매월 일정률을 적용한 이용수수료에 대한 수익을 인식한다.
* 단말기(휴대폰, 태블릿PC 등) 개통과 관련된 관리수수료는 고객 이탈 시까지 수익으로 인식한다.

**제6조 판매비와일반관리비 범위와 기재 방법**

판매비와일반리비는 직접비 등 영업의 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지출 성격에 따라 적절한 과목으로 세분하여 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퇴직충당금 처리기준**

1. 결산일 현재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하였을 시의 퇴직급여 추산액(이하 ”일시 퇴직금” 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한다
2. 전항의 전 종업원에는 임원과 사원을 포함시키고 일시 퇴직금 산출 방법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과 급여규정을 준용한다. 단,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운영요령을 준용하며, 퇴직 충당은 별도의 지침에 의한다.
3.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여 일시 퇴직금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외 적립할 수 있다.

**제8조 대손충당금 처리기준**

1.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 등의 잔액에 대하여 개별분석 및 과거의 대손경험율에 의하여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충당한다. 대손경험율은 결산일 현재부터 과거 5년간의 대손 처리 실적이 각 해당 채권 잔액에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2. 대손이 발생한 때에는 제 ①항의 대손충당금을 사용하고 동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 또는 당기 발생 채권에서 대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상각으로 비용 처리한다.
3. 제 ①항의 대손충당금 설정 시에는 대손추산액과 대손충당금 잔액과의 차액을 대손상각 또는 대손충당금환입액으로 계상하고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은 판매비와일반관리비로 기재하고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4.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과목 및 설정 비율을 매 결산기 마다 반영하여 충당한다.

**제9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기준**

1. 수선비로써 당해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것은 수익적 지출로 하여 비용처리 하여야 한다.
2.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제10조 외화차손익 및 외화환산손익의 회계처리 기준**

1.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 시에는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부상 원화금액과의 차액은 영업외수익의 외화차익 또는 영업외비용의 외화차손으로 기재한다.
2. 결산일에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를 환산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부상 원화금액과의 차액은 영업외수익의 외화환산이익 또는 영업외비용의 외화환산손실로 기재한다.

**제11조 감가상각 회계처리의 기준**

유형고정자산은 간접법으로 무형고정자산은 직접법으로 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 처리한다.

**제12조 법인세비용의 회계처리기준**

1. 당기에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비용은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2. 전기에 해당하는 법인세 추납액 및 법인세 환급액은 법인세비용과 상계 처리한다.

**제 3 장 재무상태표**

**제13조 재무상태표의 서식**

대차대조표는 계정식으로 작성한다. 다만, 사외에 제출 또는 공시용은 계정식과 보고식을 병용한다.

**제14조 유동성과 비유동성의 구분**

1. 1년을 영업 순환기간으로 하여 이를 유동성과 비유동성으로 구분하여 표시 처리한다.
2. 1년 이내에 회수 또는 결제되어 순환되는 것은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로 하고, 1년 이상에 걸쳐 순환되는 것은 비유동자산과 비유동부채로 구분 표시한다.

**제15조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장기금융상품, 받을어음, 전자채권 회계처리**

1. 현금은 시재 보유 현금을 말하며, 통화와 내외국 통화 및 수표(국고 및 보증수표를 말하며, 선일자수표는 제외)와 우편환 증서, 대체저금증서, 타인 발행 당좌수표 등 통화대용증권을 포함하고,예금은 금융기관의 당좌예금, 보통예금, 외화예금, 우편환 대체 저금을 말하며, 현금성자산은 큰 거래 비용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 금융 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 또는 상환 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2. 단기금융상품은 은행과 신용금고, 수협, 농협 및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에 대한 정기예금,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이내에 도래하는 것으로 하고,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별도로 기재한다.
3. 장기금융상품은 단기금융상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으로 하고,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별도로 기재하며, 받을어음은 약속어음, 환어음, 선일자수표 등의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말하며, 전자채권은 전자외상매출채권, 기업구매자금, 기업구매카드 등 상거래에서 발생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된 채권을 말한다.

**제16조 저장품의 회계 처리기준**

1. 소모품, 연료, 사무용품, 작업용품 등을 구입 보유하는 때에는 저장품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저장품의 평가는 취득원가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물가조사표에 의한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한 평가손실은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제17조 상품의 회계 처리기준**

1. 대외판매를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여 보유한 때에는 상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단, 저장품과 혼적보관으로 별도로 구분이 어려운 물품은 계속적인 회계처리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상품의 평가는 취득원가에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단, 판매 물품의 특성상 다른 방법을 적용 하는 것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 가격 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단, 매출 가격 환원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품목은 평가할 때마다 품목별 재고조사표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3. 순실현가능금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금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제18조 선급금, 선급비용의 회계 처리기준**

1. 영업활동에 수반하여 선급 된 고객사의 입체금과 가지급금 등의 미결산 항목 또는 소액 전도자금 등으로 단기간 내에 회수 또는 정리되는 것은 선급금으로 처리한다.
2. 선급비용은 기 지급한 비용 중에서 보험료, 임차료 등과 같이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기간 귀속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차기 이후에 비용화 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19조 유가증권 회계 처리기준**

1. 시장성이 있는 국공채, 지방채 등의 채권과 주식 중 일시적 소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처리하고, 타회사를 지배할 목적과 장기보유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종속기업투자주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처리한다.
2. 유가증권은 실사 자산으로 보유하여야 하나, 증권회사에 예탁한 경우와 거래처에 공탁 또는 보증금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증권회사에 보호예수된 경우에는 주석에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 유가증권의 평가**

1. 유가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종속기업투자주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취득원가에 종목별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하고, 공정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2. 제 ①항의 시가를 공정가액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종가에 의한다. 다만,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종가에 의한다.
3. 비상장주식으로서 발행회사의 장부상 순자산 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감액을 할 수 있다.
4. 제 ②항 및 제 ③항의 조항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평가할 경우 당좌자산의 유가증권에 해당되는 당기의 시가 변동에 따른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유가증권평가손익으로 인식하여, 단기 영업성과에 반영한다. 종속기업투자주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주식 평가에 대해서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의한다.

**제21조 건설중인 자산계정의 회계 처리기준**

1. 비유동자산 취득을 위하여 건설 및 취득이 완료될 때까지 선급된 금액은 건설중인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취득 및 건설이 완료될 때에는 동 금액을 당해 비유동자산 계정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22조 진행중인 자산의 회계 처리기준**

1.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각각에 대해 그 수행의무 완료까지의 진행율을 측정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2. 진행율 측정방법은 투입법으로 하며 계약자산 또는 계약부채로 처리한다.
3. 계약자산(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
4. 계약부채(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

**제23조 미지급비용과 미지급금의 회계 처리기준**

1. 미지급금은 고정자산 구입 및 법인카드 경비 지출의 미지급액을 말한다.
2. 미지급비용은 기 비용처리 된 또는 향후 비용처리 하여야 할 제비용 및 미지급액(공과금, 수선비, 유류대, 자재대, 임차료, 보험료, 배상액)을 말한다.

**제24조 수선충당금의 회계 처리기준**

1. 비유동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정기적으로 경상적 수선을 하게 되는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측하여 매월 수선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2. 비유동자산을 수선하였을 경우에는 우선 충당금 계정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동 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직접 해당관리비로 비용처리 하여야 한다.

**제25조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

1.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는 결산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비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는 취득일 또는 당초 발생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2. 전항의 환율은 ㈜하나은행 고시 최초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3. 제 ①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차손익,외화환산손익은 당기 수익 또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26조 해외사업장의 외화표시 재무제표 환산**

1. 해외사업장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 항목은 결산일 현재의 제 25조를 준용하며, 손익계산서 항목은 당해 회계연도 매일 평균 환율로 환산한다.
2. 제 ①항의 조항에 의하여 재무제표 환산 시에 발생하는 환산 차액은 자본조정 계정으로 처리하며, 관련 해외사업장이 폐쇄되는 회계연도의 특별손익으로 처리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업무 전산화에 따른 회계처리와 회계장표의 사용 및 생략) 회사 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전산처리 요령은 본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장표를 신설 또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장표의 비치를 생략한 경우에도 필요 시에는 동일한 전산 장표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